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광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0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2.

발 의 자 : 이광재 · 백혜련 · 박지혜
김용만 · 이재강 · 전용기
김병주 · 허성무 · 이연희
조승래 · 윤종균 · 박희승
박지원 · 정태호 · 이수진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개정을 통하여 반환공여구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시설, 연구시설, 문화·체육시설 등 공공적 목적의 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장기분할상환 및 장기 대부가능하도록 하려는바,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상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투자 촉진과 공공적 목적의 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별표 제223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10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 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특례유형	존속기한
223	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14조의2	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 가액의 1천분의 10이 상으로 하고 장기 사 용허가 등	2039. 12. 31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